

의안번호	제 37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6월 일 (제 281 회)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영재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6
----------	-----

발의연월일 : 2009년 6월 2일

발 의 자 : 조영재, 연만흙,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이필용
장주식의원(7인)

개정이유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

- 조례명을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

나. 장학금 중복지급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안 제3조 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항과 조문사이를 띄어쓰기(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2) 제1조 목적에 약칭의 사용 금지

3) 및, 또는, 인, 이외 등의 자구를 알기쉬운법령 정비체제에 맞춤.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행정국)

다. 예산조치 :

라. 규제심사 :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녀 및 유자녀”를 “자녀나 유자녀”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새마을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를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 성적”을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으로, “정원 의 100의 50이내”를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또는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

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선정)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제1항 중 “년간”을 “연간”으로, “5퍼센트로”를 “5퍼센트 이내로”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장학생에게”를 “고등학교 장학생에게”로 하고, “대학생은”을 “대학교 장학생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군지회장”을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으로, “매학기”를 “매 학기”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지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비 이외의”를 “학비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지회장”을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 또는 시군”를 “도나 시·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군”을 “도, 시·군”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확보하되 도 및 시군”을 “확보하되, 도와 시·군”으로,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9조제1항과 제2항, 제11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쓰기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자녀 및 유자녀</u>로서 학업성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u>새마을 장학금</u>(이하 “<u>장학금</u>”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4. 13]</p> <p>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u>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u>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u>2년이상</u>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u>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u> 아니한다. <개정 2004. 8. 2, 2007. 4.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u>자녀 및 새마을지도자</u>로서 새마을사업 <u>수행중 사망 또는 분상을 입은 전·현직</u>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 성적이 <u>재적학년 정원의 100의 50이내</u>에 해당하는 자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p>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신설 2007. 4. 13]</p> <p>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장(이</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자녀나 유자녀</u>로서 학업성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u>새마을 장학금</u>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u>장학금</u>”이라 한다)의 종류는 <u>유공자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장학금</u>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u>2년 이상</u>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u>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u>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u>자녀나 새마을지도자</u>로서 새마을사업 <u>수행 중 사망이나 분상을 입은 전·현직</u>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u>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u>에 해당하는 자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p>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p> <p>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u>도 새마을회</u>”라 한다) 시·군지</p>

하 “시·군지회”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로 한다)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지회장은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2, 2007. 4. 13>

제5조(선정) ①도 새마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2, 2007. 4. 13>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②삭제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 4. 13>

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

[전문신설 2007. 4. 13]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4. 13]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

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또는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① 도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

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 1.~2. (생략)
 -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② 시·군·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4. 8. 2)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새마을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 및 시·군은 소요예산액의 50%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 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②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나 시·군에 새마을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 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와 시·군은 소요예산액의 50%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